

자원순환촉진법과 재활용의 미래



박성열 | E&E커뮤니케이션 대표

폐기물을 현대문명사회에서 생겨난 부산물쯤으로 치부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과 소각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단위면적당 폐기물발생량은 OECD 국가중 3번째로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많은 자원들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원순환촉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원순환촉진법은 폐기물관리법보다 상위 개념의 법률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가 전체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률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률을 설정하는 등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Zero)화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자원순환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정책과 결부되어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자원순환률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률을 설정하는 등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Zero)화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자원순환 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정책과 결부되어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시작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 그리고 전국 재활용업 종사자(일명 고물상)들의 모임인 자원재활용연대 등이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순환촉진법이 기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사 중복성이 있고 제조업 등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 활동의 위축 및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재활용업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 매립지 잔여 사용연수가 약 13년밖에 남지 않았고, 산업폐기물 매립지는 약 4년에 불과해 폐기물 매립 제로화라는 대책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번에 제정되는 자원순환촉진법은 재활용 자원과 폐기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제화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활용을 최대한 늘린다는 법 취지에 맞게 대상도 늘려야 한다. 환경부가 고철이나 폐지 같은 제한된 품목만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려 하려는 생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고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모처럼 자원순환국가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는 법 제정인 만큼 재활용 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원, 관련산업 육성 등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아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새롭게 제정되는 자원순환촉진법이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재활용 기업들을 탄생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